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시행 2025. 10. 1.] [교육부훈령 제534호, 2025. 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총사업비 관리지침」과의 관계)

제3조(정의)

제4조(적정 사업규모의 확정 등)

제5조(관리대상 사업)

제6조(설계 단계)

제7조(시공 단계)

제8조(유효기간)

제9조삭 제

제10조삭 제

제11조삭 제

제12조삭 제

제13조삭 제

제14조삭 제

제15조삭 제

제16조삭 제

제17조삭 제

제18조삭 제

제19조삭 제

제20조삭 제

제21조삭 제

제22조삭 제

제23조삭 제

제24조삭 제

제25조삭 제

제26조삭 제

제27조삭 제

제28조삭 제

제29조삭 제

제30조삭 제

제31조삭 제

제32조삭 제

제33조삭 제

제34조삭 제

제35조삭 제

제36조삭 제

제37조삭 제

제38조삭 제

제38조의2삭 제

제39조삭 제

제40조삭 제

제41조삭 제

제42조삭 제

제43조삭 제

제44조삭 제

제45조삭 제
제46조삭 제
제47조삭 제
제48조삭 제
제49조삭 제
제50조삭 제
제51조삭 제
제52조삭 제
제53조삭 제
제54조삭 제
제55조삭 제
제56조삭 제
제57조삭 제
제58조삭 제
제59조삭 제
제60조삭 제
제61조삭 제
제62조삭 제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시행 2025. 10. 1.] [교육부훈령 제534호, 2025. 10. 1., 일부개정]



교육부(대학시설지원과), 044-203-717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사업비 관리지침」과의 관계)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의 관리 등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집행기관의 장"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국립대학자원관리 시스템"으로 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총사업비란 토목, 건축 등 건설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공사비, 보상비(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적정 사업규모의 확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 등을 확정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심의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 다만, 국고에서 융자 및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심의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위치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총사업비를 최초 심의에서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 물가인상분과 지가 상승분, 감리비 증액분은 제외한다.
 - 나. 사업규모를 최초 심의에서 확정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대학 또는 학과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라. 사업위치를 최초 심의에서 확정된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대지 외의 위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사업 중 다음 연도 신규 건설사업은 해당 연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 일부를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이 시행하는 사업 중 2년 이상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
2.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②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설계 단계) ① 관리대상 사업의 기본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시공 단계)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완공예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 조정내용이 집행기관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그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사전검토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연도 완공사업으로서 다음 연도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해당 연도 3월 31일 이전에 해당 물가상승 예상분의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을 시행하고, 다음연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총사업비를 정산한다.

④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8조의2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51조 삭제

제52조 삭제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제55조 삭제

제56조 삭제

제57조 삭제

제58조 삭제

제59조 삭제

제60조 삭제

제61조 삭제

제62조 삭제

부칙 <제534호,2025.10.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양식

[별표 2]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

[별표 3]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완료 보고서

<별표 1>

사업명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양식

2016. .

기 관 명

사업명 :

I. 사업관리 항목

① 사업관리 코드

회계	소관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회계명	소관명	계정명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회계코드	소관코드	계정코드	분야코드	부문코드	프로그램코드	단위사업코드	세부사업코드

② 관리항목

사 업 유 형				사업수행 (대행)기관명	총액계상 예산사업	R&D 사업
토목사업	정보화	건축사업	연구기반 구축 R&D 사업			

③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행기간		용역 수행기관	용역결과 총사업비	B/C	AHP	비고
	착수	완료					
기본계획(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착공 (충공정률 %)							·낙찰자 선정방법 ·낙찰률 등

④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조정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현행(A)	변경요구	조정(B)	증(△) 감	
				(B-A)	%
사업기간	현 행		요 구		조 정
	(착수)년 ~ (완료)년		(착수)년 ~ (완료)년		(착수)년 ~ (완료)년

II. 사업 세부설명

담당자	기관(실·국)명	직책	성명	연락처
	기관(실·국)명 입력	실(국)장		
		○○○과장		
		서기관/사무관		*휴대폰 병기 요망

1. 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 사업목적
- 필요성·지원사유 및 기대효과 등 기술

② 사업위치

- 행정구역상 동·리까지 기입(시중점이 있는 경우는 시점 ~ 종점)

③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년 ~ 년 (년)		* 총연장(km), 교량과 터널의 개소 및 연장(m) 등 * 부지면적(평), 건축연면적(평), 건물 층수 및 동수

※ 상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그 내용을 기술하여 첨부

④ 사업 기대효과

- 비용/편익분석 내용, 투자 후 개선효과 등에 대한 직·간접 기대효과를 기술

⑤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 지원근거 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연도, 그 동안의 정책변화, 추진 배경 등을 기술
 - 건축·토목 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⑥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⑦ 국고지원 기준

① 지원조건

- 정액지원 조건 여부
- Matching Fund, 인력 및 조직감축,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② 지원형태 및 수준

구 분	총사업비	국 가				지자체	민간	기타
		직접수행	보조금	융자	출연 (출자)			
지원액(백만원)								
지 원 비 율								

※ 지원형태 및 수준 등에 대한 상세 설명 필요사항은 별도 기입

2. 사업추진 현황

① 계약체결 현황

①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분(공정별)	예산상 공사비	최초계약			최종계약		계약 변경 회수	최종 물가 조정일
		계약일	예정가격	계약액	계약일	계약액		
○ 기계약분 계								
- 구분1								
○ 미계약분 계								
- 구분1								
합 계								

② 보상비(용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고
		일자	계약액(B)		
○ 보상비	예산상 사업비	yyyy.mm	계약액		* 미계약분 및 잔액 처리결과 표시

③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관리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고
		일자	계약액(B)		
○ 설계비	예산상 사업비	yyyy.mm	계약액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표시
○ 감리비	예산상 사업비	yyyy.mm	계약액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표시
○ 시설부대비	예산상 사업비	yyyy.mm	계약액		* 미계약분 및 잔액처리 결과 표시
합 계					

② 년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현행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5까지		2016년		2017년 요구	2018년 이후
		현행기준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총사업비>								
1. 공사비	소계							
	주 공사비							
	법정경비							
2. 보상비	소계							
	직접							
	간접							
	무상사용분							
3.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감리비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시설부대비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재원분담>								
○ 국고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지방비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차입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민자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기타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3. 총사업비 변경 연혁(관리대장)

① 총사업비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단계	총 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최초 (yyyy.mm)									
1차 조정 (yyyy.mm)			소계 :						
			*설계변경유형 참고						
			*설계변경유형 참고						
2차 조정 (yyyy.mm)			소계 :						
			*설계변경유형 참고						
			*설계변경유형 참고						
N차 조정 (yyyy.mm)			소계 :						
			*설계변경유형 참고						
			*설계변경유형 참고						

※ 총사업비 변경내역은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의 (붙임 2- 설계변경 항목의 유형분류)를 참고하여 "코드-설계변경유형"을 기입

② 자율조정 한도액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현행 한도액 (A)	한도 설정액	집행액 (B)	변경 한도액 (A-B)	세부 반영내역
최초 (2015.06)		-				* 한도액 반영시 낙찰가의 10% 또는 잔여공사비의 10%인지 기입
1차 (yyyy.mm)						■관련코드 :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기입(반영액)
2차 (yyyy.mm)						■관련코드 :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기입(반영액)
N차 (yyyy.mm)						■관련코드 : 자율조정 세부항목을 기입(반영액)

※ 세부 반영내역은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의(붙임 3-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를 참고하여 "코드-자율조정항목"을 기입

4.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

① 사업기간 변경요구

현 행		변 경 요 구	
착 수	완 료	착 수	완 료
변경 사유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②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	변경요구	증 감		증감내역
	사업비 (A)	사업비 (B)	(B-A)	%	
<총사업비>					
○ 공사비					·증감내역
○ 보상비					·증감내역
○ 시설부대경비					·증감내역

③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초단계	변경요구	증 감		해당유무
	사업비 (A)	사업비 (B)	(B-A)	%	
<총사업비>					
<총사업비> (물가지가 제외시)	-				
○ 물가상승분	-				·산출근거
○ 지가상승분	-				·산출근거

④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요구(B)		변경요구 (A+ B)	변경사유
		순증액	(%)		
<총사업비>					
1. 공사비	현행	변경			
○ 설계변경 유형 1	현행	변경			·변경사유
○ 설계변경 유형 2	현행	변경			·변경사유
○ 설계변경 유형 3	현행	변경			·변경사유
* 변경외 공사비	현행	현행	-	-	-
2. 보상비	현행	변경			
○ 설계변경 유형 1	현행	변경			·변경사유
○ 설계변경 유형 2	현행	변경			·변경사유
* 변경외 공사비	현행	현행	-	-	-
3. 시설부대경비	현행	변경			
○ 설계비	현행	변경			·변경사유
○ 감리비	현행	변경			·변경사유
○ 시설부대비	현행	변경			·변경사유

* 사업비 조정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노임단가 가산은 미적용

⑤ 자율조정 한도액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현행 자율조정한도액	총한도액 (A)		기집행액	잔여한도액 (B)
변경 자율조정한도액	한도변경 순증액 (C)	변경후 총한도액 (A+ C)	변경후 잔여한도액 (B+ C)	·변경사유
				·변경사유

⑥ 총사업비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⑦ 변경전 담당자(설계자)와 변경요구시 담당자(설계자)의 의견 비교

변경전 담당자 (설계자) 검토의견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변경요구 담당자 (설계자) 검토의견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⑧ 증액에 따른 책임소재 및 제재조치 계획

○ 사유별로 증액원인의 책임소재와 제재조치 실적 및 계획 기술

5. 참고자료

* 총사업비 변경내역, 추진내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 또는 표로 직접 작성하거나, 설계도면, 조직도 또는 별첨 문서 등을 별도 파일로 작성할 경우는 해당 파일의 제목을 입력하여 하이퍼링크로 연계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양식 작성요령>

【 표지부 】 다음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예시)

00000공사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2016 . .

기 관 명

【사업명】

사업명 : (* 세부사업명 기재, 신규/계속여부 표시안함)

○ 사업명 : 세부사업명을 기입

I. 사업관리 항목

① 사업관리 코드

(예시)

회계	소관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일반회계	교육부		교육	고등교육	국립대학 운영지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국립대학 시설확충
110	13	-	50	052	2700	2740	300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예산과목코드와 동일하게 부여

② 관리항목

(예시)

사 업 유 형				사업수행 (대행)기관명	총액계상 예산사업	R&D 사업
토목사업	정보화	건축사업	연구기반 구축 R&D 사업			
		교육연구 시설		00대학교		

○ 사업유형 : 해당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붙임 1-토목·건축사업의 사업유형 분류)를 참조하여 기입

○ 사업 수행(대행)기관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중 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관명을 기입

(예시 1) 토목사업의 댐 공사 : 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수자원공

(예시 2) 건축사업의 000 신축공사 : 00대학교

○ 총액계상사업·R&D사업 중 토목사업, 건축사업, 연구기반구축사업, 정보화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각각 표시

③ 사업 추진현황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수행기간		용역 수행기관	용역결과 총사업비	B/C	AHP	비고
	착수	완료					
기본계획(구상)	2013.04	2013.12	자체(교육부)	76,200	-	-	
예비타당성조사	2014.02	2014.08	KDI	57,600	1.31	0.61	
타당성조사	-	-	-	-	-	-	
기본설계	2015.03	2015.06	동성ENG. 외 1	61,326	1.42	-	
실시설계	2015.08	2015.12	동성ENG. 외 1	60,616	1.48	-	
공사착공 (총공정률 76%)	2016.03	2018.12	동아건설산업 외 12업체	51,534	-	-	· 최저가낙찰제 · 낙찰률 82.3%

○ 수행기간 : 연도(4자리), 월(2자리)을 점(.)으로 구분하여 기재

- 현재 단계별 진행상태에 있어 완료연도를 기입하기 어려운 경우는 완료 예상(계획)기간을 기입

○ 용역수행기관

- 용역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설계 등을 수행한 기관명을 기입
- 공사 진행중인 경우에는 원도급업체의 대표업체를 기입

○ 용역결과 총사업비 : 각 단계별 용역결과시 제시된 총사업비 규모

○ 경제성분석(B/C) 결과 : 실시한 경우에 한해 기입

○ 정책적분석(AHP) 결과 : 실시한 경우에 한해 기입

○ 공사착공단계

- 현재의 총공정률을 괄호안에 기입
- 비고란에는 낙찰자결정방법(예: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턴키 및 대안 입찰제 등)과 주공종의 낙찰률 등을 기입

4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조정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현행(A)	변경요구	조정(B)	증(△) 감	
				(B-A)	%
	66,936	89,025			
사업기간	현 행		요 구		조 정
	2014년 ~ 2017년		2014년 ~ 2018년		(착수)년 ~ (완료)년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 현행(A) : 현재의 총사업비 금액
- 변경요구 : 총사업비 변경요구를 원하는 금액

○ 사업기간

- 현행 : 현재의 총 사업기간을 4자리로(예:1998) 기재
- 요구 : 변경요구를 원하는 기간을 4자리로 기재

II. 사업 세부설명

(예시)

	기관(실·국)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담당자	000국 000과	00국장	○○○	051) 000-0000
		00과장	○○○	051) 000-0000
		서기관/사무관	○○○	051) 000-0000 010) 0000-0000

○ 정부대행사업일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담당자를 기재

▪ 연락처는 중앙행정관서의 전화번호 기재

▪ 실무급 담당자는 휴대폰 병기 요망

※ 주의 : 대표전화(ARS) 번호는 기입금지 요망

1. 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 사업목적

○ 필요성·지원사유 및 기대효과 등 기술

② 사업위치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과학산업단지내

③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2014년 ~ 2018년 (5년)	50,731	○ 부지 671평 ○ 연면적 2,230평(지상5층, 지하1층)

④ 사업 기대효과

- 현 수준과 투자 후 개선효과를 가급적 지표로 비교 (상수도 보급율, 도로포장율 등)
- 계량화가 어려운 사업은 기대효과를 설득력 있게 기술
- 직접·간접 기대효과 망라
-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있는 경우는 비용/편익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 제시
(보고서 작성자, 작성일 명시)

⑤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 조약, 공약, 관련시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추진경위
 - 최초사업 년도 및 규모, 중도에 사업추진이 지체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⑥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필요할 경우 도표, 그림 등 표현 가능)

⑦ 국고지원 기준

① 지원조건

- 정액지원 조건 여부
- Matching Fund, 인력 및 조직감축,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② 지원형태 및 수준

- 전액국고지원사업 또는 정률지원사업일 경우에는 지원액과 지원비율을 기입
- 정액지원사업일 경우는 해당금액을 지원형태에 맞도록 해당란에 지원액을 기입하고, 지원비율란에는 "정액"으로 표시

(예시 : 정률지원사업)

구 분	총사업비	국 가				지자체	민간	기타
		직접수행	보조금	융자	출연 (출자)			
지원액(백만원)	50,000	25,000				20,000	5,000	
지 원 비 율	100%	50%				40%	10%	

(예시 : 정액지원사업)

구 분	총사업비	국 가				지자체	민간	기타
		직접수행	보조금	융자	출연 (출자)			
지원액(백만원)	50,000				25,000	20,000	5,000	
지 원 비 율	-				“정액”	-	-	

2. 사업추진 현황

① 계약체결 현황

① 공사비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공정별)	예산상 공사비	최초계약			최종계약		계약 변경 회수	최종 물가 조정일
		계약일	예정 가격	계약액	계약일	계약액		
○ 기계약분 계	78,645	-	78,645	51,749	-	56,708		
- 토목공사	76,288	2013.12	76,288	49,587	2005.11	54,546	1	2005.10
- 건축공사	2,012	2013.12	2,012	1,851	2004.12	1,851		
- 전기공사	345	2013.12	345	311	2005.02	311		
○ 미계약분 계	966		966					
- 통신공사	312	-	312					
- 폐기물처리	654	-	654					
합계	79,611	-	79,611	51,749		56,708		

- 예산상 공사비 : 예산상 반영되어 있는 공사비 규모 기입
- 계약일 : 연도(4자리), 월(2자리)을 점(.)으로 구분 기재
- 예정가격 : 계약 공고시 산정된 예정가격을 기입
- 계약액 : 공사체결시 해당 사업의 총공사 부가금액 기준으로 작성
(연도별 공사체결 금액과는 구분됨)
- 최종계약 : 현재의 계약내용을 중심으로 기입
- 계약변경회수 : 최초 계약 이후 내역사업별 총 계약 변경회수
- 구분 : 계약분, 미계약분으로 구분하여 공정별 또는 사업별로 세분

② 보상비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상 사업비(A)	현 계약현황		잔액 (A-B)	비고
		일자	계약액(B)		
○ 보상비	6,457	2014.10	6,233	224	○ 잔액은 잔여부지 매입 완료후 총사업비 조정예정

- 예산상 사업비 : 예산편성시 계상된 사업비 규모를 기입
- 일자 : 연도 (4자리), 월 (2자리)을 점(.)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계약액 : 용지매입 또는 용지보상 계약체결액을 기준으로 기입

③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상 사업비(A)	현 계약현황		잔액 (A-B)	비 고
		일자	계약액(B)		
○ 설계비	2,105	2014..06	1,896	209	○ 잔액은 기 총사업비 조정
○ 감리비	4,179	2015.12	3,826	353	○ 잔액은 기 총사업비 조정
○ 시설부대비	342				
합계	6,626		5,722		

- 일자 : 연도 (4자리), 월 (2자리)을 점(.)으로 구분 기재
- 예산상 사업비 : 예산편성시 계상된 사업비
- “비고”
 - 미계약분, 계약체결 잔액 등의 주요 내역을 기입

② 년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현행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4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현행기준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이후
<총사업비>								
1. 공사비	소계							
	주 공사비							
	법정경비							
2. 보상비	소계							
	직접							
	간접							
	무상사용분							
3.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감리비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시설부대비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재원분담>								
○ 국고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지방비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차입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민자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기타		현행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요구	

○ 총사업비는 변경요구액이 아닌 현재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작성

○ 2014년 이전 기타부대비의 예산 및 결산은 공사비 등에서 기 편성 및 집행되었던 기타부대비 항목의 예산 및 결산금액을 기재

예시) 예산²⁾는 2012년까지 공사비 등에 기 편성되었던 사후환경영향평가 등 기타 부대비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기재하고, 예산¹⁾에서는 그 비용만큼 제외

3. 총사업비 변경 연혁(관리대장)

① 총사업비 관리대장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단계	총 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최초 (2013.1)	예타	130,006							
1차 조정 (2013.12)	실시설계	165,006	소계 : 35,000	55,000	35,000				
			F-01 설계결과 반영	35,000	15,000				
			G-02 감정평가 결과	20,000	20,000				
2차 조정 (2014. 2)	공사중	160,229	소계 : △4,777						
			D-01 낙찰차액 감액	△4,777	△4,777				
3차 조정 (2014.12)	공사중	164,489	소계 : 4,260					4,250	4,260
			E-01 물가변동			2002. 1	2002.8	4,250	4,260
4차 조정 (2015. 3)	공사중	166,911	소계 : 2,422					2,422	2,422
			E-01 물가변동			2002. 8	2003.2	2,422	2,422
5차 조정 (2016. 3)	공사중	171,384	소계 : 4,473	2,153	2,153			2,320	2,320
			C-01 안전시설(중분대)	2,153	2,153				
			E-01 물가변동			2003. 6	2004.3	2,320	2,320
6차 조정 (2016. 8)	공사중	169,825	소계 : △1,560	△1,499	△1,560				
			C-01 교통표지판 변경	1,501	1,440				
			C-02 감정평가 결과	△3,000	△3,000				

○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총사업비 변동 연혁을 기입

○ 조정차수 : 최초 총사업비를 제외한 변경 차수별 1, 2, 3n 순으로 입력하고, 변경일자는 년(4자리)과 월(2자리)을 (.)으로 구분하여 기입

- 사업단계는 ①사업구상, ②예비타당성조사, ③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④기본설계, ⑤실시설계, ⑥공사착공, ⑦공사중 가운데 선택하여 기입
- 총사업비는 최초 총사업비 및 예비타당성조사단계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처와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를 기입
- 물량변동과 물가변동의 내역란에는 (붙임 2)를 참조하여 「설계변경항목의 유형 분류」 중 선택하여 소구분의 유형항목을 코드값과 함께 기입
- 물량변동은 요구와 조정내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세부 내역별로 작성

※ 요구액과 조정액은 총액이 아닌 증감액으로 기입

2 자율조정 한도액 관리대장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현행 한도액 (A)	한도 설정액	집행액 (B)	변경 한도액 (A-B)	세부 반영내역
최초 (2013.06)	65,411	-	5,233	-	5,233	* 토목공사 낙찰가의 8% 반영
1차 (2013.08)	66,936	5,233	-	1,525	3,708	①-01 문화재 시발굴비(324) ③-03 연약지반 처리(1,201)
2차 (2013.09)	66,936	3,708	1,245	-	4,953	* 건축공사 낙찰가의 8% 반영

※ 반영차수별로 상세내역을 기입

- 조정차수 : 최초는 최초 한도액 설정시점을 기입하고, 이후에는 한도액을 집행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 시점을 기입
 - 최초에는 한도액 반영기준 명시(낙찰가의 10% 또는 잔여공사비의 8%)
- 총사업비는 최초 총사업비 및 예비타당성조사단계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를 기입
- 한도액 세부 반영내역란에는 (붙임 3)의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을 참조하여 “코드-자율조정항목”을 기입

4.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

① 사업기간 변경요구

(예시)

현 행		변 경 요 구	
착 수	완 료	착 수	완 료
2014년	2017년	2014 년	2018 년
변경 사유	○ 연약지반이 발견되어 부지조성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지연됨에 따라 완공에 필요한 절대공기 확보를 위해 사업기간 1년 연장 필요		

- 변경 전 : 현행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기입
- 변경 후 : 변경 요구하는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기입
- 변경사유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② 변경요구 총괄표

(예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	변경요구	증 감		증감내역
	사업비 (A)	사업비 (B)	(B-A)	%	
<총사업비>	76,100	101,213	25,113	33.0	
○ 공사비	44,453	59,187	14,734	33.1	·절토부 사면보강외 2건
○ 보상비	31,378	41,401	10,023	31.9	·감정평가 결과 반영
○ 시설부대경비	269	625	356	132.3	·감리비 증가 외 1건

- 증감내역은 총사업비 변경요구의 주요 증감내역을 요약해서 기입

③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예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초단계	변경요구	증 감		해당유무
	사업비 (A)	사업비 (B)	(B-A)	%	
<총사업비>	76,100	101,213	25,113	33.0	
<총사업비> (물가지가 제외시)	76,100	82,465	6,365	8.4	
○ 물가변동분	-	8,725	-	-	·'14.1월 대비 9%상승
○ 지가변동분	-	10,023	-	-	·'14.1월 대비 감평결과 12%상승

- 최초단계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반영된 총사업비(예비비 제외)를 기입 하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인 경우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의 최초 총사업비를 기입(단, 이전에 타당성재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반영된 총사업비 기입)
- 물가변동분 계산시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중 증가율이 낮은 지수를 이용하여 산정(* 발표 시점 간 차이로 택일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발표된 지수 사용)
- 지가변동분 계산시 감정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치와 대비하고, 감정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이용

④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요구(B)		변경요구 (A+ B)	변경사유
		순증액	(%)		
<총사업비>					
1. 공사비	현행	변경			
○ 설계변경 유형 1	현행	변경			·변경사유
○ 설계변경 유형 2	현행	변경			·변경사유
○ 설계변경 유형 3	현행	변경			·변경사유
* 변경외 공사비	현행	현행	-	-	-
2. 보상비	현행	변경			
○ 설계변경 유형 1	현행	변경			·변경사유
○ 설계변경 유형 2	현행	변경			·변경사유
* 변경외 공사비	현행	현행	-	-	-
3. 시설부대경비	현행	변경			
○ 설계비	현행	변경			·변경사유
○ 감리비	현행	변경			·변경사유
○ 시설부대비	현행	변경			·변경사유

○ 구분란의 설계변경 유형은 (붙임2-설계변경 항목의 유형분류)를 참조하여 코드-설계변경유형을 기입

- (예시-토공구간 교량화 요구일 경우) → B-01 토공구간 교량화
- (예시-여객편의시설 개량 경우) → C-16 여객편의시설 보완

○ 현행란은 설계변경항목과 관련하여 현재 편성된 사업비를 기입하고, 변경요구란은 순증액으로 기입

* 사업비 조정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노임단가 가산은 미적용

5 자율조정 한도액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현행 자율조정 한도액	총 한도액 (A)		기 집 행 액	잔 여 한도액 (B)
변경 자율조정 한도액	한도변경 순증액 (C)	변경후 총 한도액 (A+ C)	변경후 잔여 한도액 (B+ C)	변경사유

- '붙임3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에 따라 자율조정 한도내 항목에 대한 조정 내용 기재
-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액(이월액 포함), 기집행액 및 잔여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산출내역을 별도 제출

6 총사업비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 총사업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7 변경전 담당자(설계자)와 변경요구시 담당자(설계자)의 의견 비교

변경전 담당자 (설계자) 검토의견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 변경요구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상세히 기술 *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항목을 반영하지 못한 주요 사유 중심으로 기술			
변경요구 담당자 (설계자) 검토의견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 변경하고자 하는 설계변경항목의 필요성 및 근거 등을 명시 * 공사중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변경의 타당성 및 사유에 대한 의견 기재			

⑧ 증액에 따른 책임소재 및 제재조치 계획

- 증액 사유별로 책임소재와 제재조치 실적 및 계획을 기술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별도 참고자료에 첨부)

5. 참고자료

- 참고사항을 입력 (이미지, 표, 숫자 입력가능)
- 참고사항 중 별도 파일로 첨부할 내용은 제목을 입력하고 해당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붙임 1

토목·건축사업의 사업유형 분류

구분	토 목 사 업	건 축 사 업
사 업 유 형	· 고속국도	· 공장 또는 창고시설 · 체육관 등 운동시설
	· 일반국도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 기간국도	· 검사장 등) · 박물관 등 전시시설
	· 국도대체우회도로	· 축사 등 동물관련 시설 · 의료시설(장례식장 포함)
	· 국가지원지방도	· 공동주택 및 기숙사 · 여객 터미널 등
	· 산업단지 진입도로	· 소방서, 우체국 등 · 철도 역사
	· 광역도로	· 업무시설(공공청사) · 방송국 등 방송시설
	· 민자접속도로	· 노인복지시설 등 · 분뇨·쓰레기처리시설
	· 기타 도로	· 학교 등 교육시설 · 관광휴게시설 등
	· 항만	· 묘지관련시설
	· 일반철도	· 숙박시설(수련원)
	· 광역철도	· 교정시설
	· 농업개발	·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 댐	· 등 소년분류심사원 등)
	· 상하수도	·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 공항	·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 산업단지개발	· 용도에 쓰이는 시설)
	· 지구조성	· 연구소
		· 도서관
		· 물류시설(유통센터)
		· 숙박시설 (연수원, 면회소 등)

붙임2

설계변경 항목의 유형 분류

설계변경유형	예시
A.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물량증감	
01 문화재 시·발굴비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비, 발굴비 등 반영사항
02 폐기물 처리비	·임목·지정·건축 폐기물 수량 증감사항
03 환경·생태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비, 어업피해 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04 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비, 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05 법정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06 설계기준 강화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강화 등 안전에 관한 설계기준 강화 반영
07 각종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 등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각종 부담금
08 기타 법정경비	·준공도서전산화, 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 반영사항
B. 민원 등으로 인한 물량증감	
01 토공구간 교량화	·교량 형식변경(예: 라멘교→PSC빔교), 교량연장증가 등 포함
02 기타 교량공법 변경	·공법변경으로 인한 교량 시설비 증감사항
03 교차로 입체화	·‘평면교차→입체교차’ 변경사항
04 교차로 진출입로(램프) 추가	·민원으로 인한 램프추가 등
05 진출입로, 육교 등 설치	·차량 또는 지역주민 마을 출입을 위한 진출입시설 설치 등
06 진입도로 신설 및 변경	·진입도로 계획 변경 포함
07 대절토구간 터널화	·문화재구간 우회, 환경단체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 대절토구간을 터널로 시공변경한 사항
08 차로수 확장	·교통량 증가 등을 이유로 한 차로수 확장
09 암거(통로박스, 수로 등)설치	·민원, 지자체 요구 등으로 인한 암거 설치(토공수로 구조물화 포함)
10 용배수로 지중화	·민원에 의한 대절토 개수로 구간→관수로 및 잠관으로 변경
11 용배수로 노선조정	·용지매수 불응 등 민원에 의한 용배수로 노선조정 및 구조변경
12 부체도로 등 설치	·부체도로, 우회도로, 측도, 인도, 농로 등 설치
13 방음벽 추가	·방음벽 추가, 방음벽 형식변경 등(일반형→투명형 등)
14 접속도로 선형 개량	·접속 지방도, 국도 등 차로수 확장, 선형개량 등
15 증축시공	·지하층 증축, 주차장 증설 등(전력통신 등 설비용량 증설은 제외)
16 기존 시설물 보수보강	·기존 시설물 보수보강 등
17 수원공 구조 및 위치변경	·민원으로 인한 저수지, 양수장 등 수원공 구조 및 위치변경
18 수원공 변경	·하천관리청 협의조건 이행에 따른 수원공 구조 및 위치변경
19 도로구조 및 노선변경	·관계기관 협의 또는 민원에 의한 도로 중형단 선형 변경
20 도로 확장 및 포장	·민원 등으로 인한 도로 확장 및 포장
21 수해구역 조정	·수해구역 편입·제외 등 민원으로 인한 개발면적 조정
22 수로(홍관 등) 설치	·민원, 관련기관 요구 등으로 인한 수로 설치
23 환경개선사업	·민원에 의한 환경친화적 사업추진 요청에 따른 변경사항
24 주민숙원사업	·전망대, 공원 등 지역주민숙원사업
25 기타 민원사항 반영	·기타 민원사항 반영 등
26 철도역 신설	·지자체 민원,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철도역 추가 신설

설계변경유형	예시
C. 현장여건 변동에 의한 물량증감	
01 도로·교통안전시설	· 가로등, 중분대, 교통표지판, 교통신호기, 비행장 표지시설 등 변경
02 사면안정 등	· 사면보강, 법면보호, 터널내 보강 등
03 압판정 결과	· 압판정에 따른 토공수량 조정
04 연약지반 처리	·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토공, 구조물 물량 증감
05 토공사 수량 및 운반거리 변경	· 사토장 및 토취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등의 변경
06 노선선형변경	· 현지여건 변동으로 인한 종단·횡단 선형 변경
07 발파공법 변경	· 소음, 진동 규제에 의한 발파공법 변경
08 터널방재 시설 변경 및 추가	· 대피통로, 방연문, 환기설비 등
09 도로·하천제방 횡단공법 변경	· 관리정 협의결과 관로 횡단공법 변경(오픈컷→재킹)
10 안전시설 보강	· 교량점검시설, 소방방재시설, 안전요원 대기소, 자연재해대비 시설보강
11 군사시설 이전 및 대체시설	· 사업시행에 따른 군부대 시설 이전 및 대체시설비
12 적지복구 및 친환경시설 반영	· 훼손산림 적지복구 및 친환경시설 반영(국립공원내 훼손 복구 포함)
13 가시설계획 변경	· 가설흙막이공법 변경, 가도설치, 가설 울타리 등 변경
14 전기시설	· 분리발주 등으로 인한 전기시설 추가
15 조정·식재비 등 변경	· 도로조정식재비 반영, 인공조형물 설치, 휴게시설 설치
16 여객편의시설 보완	· 여객화장실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승강장 안전난간, 여객안내 표지판 개선, 역무자동화 설비 등 추가
17 철도·단계별 시공	· 궤도, 전차선, 통신설비, 임시선 부설, 대체시설 등 철도관련 사항
18 단순 설계누락	· 준공표지판 등 단순한 설계누락사항
19 구간 연장	· 과업구간 연장, 노선 연장 증감 등
20 관로 연장 증가	· 통합배수지 위치변경 및 관련기관 요구 등에 의한 관로연장 증가
21 설비용량 증설	·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설비용량 증감
22 향로준설	
23 호안 축조	· 가호안 축조 포함
24 안벽조성	
25 방파제 축조	
26 활주로 및 보호구역 설치 등	· 활주로 및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 또는 폭 등 변경
27 착륙대 설치 등	· 규모, 경사도, 설치공법 변경
28 유도로, 정지로 설치 등	· 제원, 폭, 경사도, 강도, 갯길, 유도로대, 이격거리 변경 등
29 계류장 설치 등	· 포장강도, 면적 등 변경
30 제방방시설 설치 등	· 위치, 수량 및 공법 변경 등
31 제한표면 저축 등	· 진입표면, 전이표면, 수평표면, 원측표면 등
32 항행안전시설 변경 등	· 현장여건변경 등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추가
33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유지관리비	· 공기연장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34 관련기관 요구사항 반영	· 감사원 및 국정원 등 관련기관 협의시 요구사항 반영
35 하천정비	· 차수공법 및 심도 변경,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변경, 준설방법 변경

붙임2

설계변경 항목의 유형 분류(계속)

설계변경유형	예시
C. 현장여건 변동에 의한 물량증감	
36 공항 안전관리규정 37 유지관리시설 38 방조제 단면 및 구조변경 39 기타 현장여건 반영	· 공항안전운영기준, 비행장시설설치기준, ICAO규정 등 관련규정의 변경, 신설 등에 따른 반영사항 · 댐, 갑문 등 시설유지관리용 도로 및 원격제어시스템(TM/TC) 등 · 해상 조망권확보 등을 위한 방조제 도로승상 등 단면변경 · 동물이동통로, 어린이보호시설 설치, 오탁방지망, 지하매설물 및 전파장애에 따른 전파장애물 제거(이설) 등
D. 공사계약 관련	
01 낙찰차액 감액 02 공사예비비 반영 03 준공 정산	·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 공사예비비 반영 · 내역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 증감
E. 물가변동 등	
0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02 관급자재 단가 변동 03 경유세율 변경	· 물가인상분(E/S) 반영, 환율변동에 따른 외자장비 구매비 증감 포함 · 조달청 단가인상, 사급자재 전환으로 인한 자재대 증감 · 경유세율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F. 실시설계 결과	
01 실시설계 결과 반영 02 분야별 실시설계 결과 반영	·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 반영(전체사업) · 전체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 실시설계 결과 반영
G. 직접 보상	
01 용지매입비 02 감정평가 결과 반영 03 부지조성원가 증감분 반영 04 손실보상	·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 · 실태조사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 가구수 증가 포함 · 산업법에 따른 부지조성원가 증감분 · 이주대책비용, 이주정착금, 어업피해보상 등
H. 간접 보상	
01 지장물건 수량 증가 02 공업용수로 및 광역상수도 이설 03 송전선로 이설 04 가스관로 이설 05 기타 이설 06 부대경비	· 노선변경에 따른 지장물건 물량 추가 · 통신선로 포함 · 기존도로 이설, 대체부지, 대체농지 등 · 분할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전비용, 위탁수수료,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등

붙임2

설계변경 항목의 유형 분류(계속)

설계변경유형	예시
I. 설계비	
01 설계비	· 기본 및 실시설계
02 설계보상비	· 설계 탈락자에 대한 법정 보상비
J. 감리비	
01 물량변동으로 인한 감리비 증감	· 물량 추가에 따른 증액
02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비 증감	· 물가 변동에 따른 증액
K. 시설부대비	
01 시설부대비	
L. 사업기간	
01 사업기간 연장	

* A ~ F : 공사비 관련

* G ~ H : 보상비 관련

* I ~ L : 시설부대경비 관련

붙임3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

	자율조정 항목	세부 항목
자율조정 한도액 외 (A)	① 공사비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 ·관급자재비 변경 (사급자재 전환 제외) ·경유세율 변경 ·공사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절감액, 준공정산 감액 ·긴급복구 선(先)조치 반영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전액 위탁 사업 등의 추가로 인한 사업비 조정
	② 보상비	·감정평가 결과반영, 집행잔액 감액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 증감, 지가변동으로 인한 보상비 증감 ·분할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전비용, 이주대책비 등 위탁수수료 조정, 개발제한구역보전보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③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낙찰차액·집행잔액 감액,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낙찰탈락 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감리비 낙찰차액·집행잔액 감액,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감리비 조 정, 공사물량 자율조정과 연계된 감리비 조정 ·공사비 낙찰차액과 연계된 시설부대비 감액, 공사물량 자율조정과 관련된 시설부대비 증감, 물가변동으로 인한 시설부대비 증감
	①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	·문화재 시굴비·발굴비 ·임목·지정·건설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 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 하는 조사용역비 ·초기안전점검비, 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각종 부담금 ·준공도서·지형도면·도로대장 전산화 비용
	②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교통처리용 안전시설(피이드럼 등), 시선유 도표지, 속도제한시설(미끄럼방지 및 그루빙), 교량점검시설, 낙 하물방지시설
자율조정 한도액 내 (B)	③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 공통	·절토사면 보강, 터널내 보강 ·암판정에 따른 수량 조정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토공, 구조물 물량 증감 ·토취장, 사토장 변경에 따른 수량 및 운반거리 반영 ·소음·진동규제로 인한 발파공법 변경 ·가설흙막이공법 ·공업용수로, 광역상수도, 송전선로, 통신선로, 가스관로 이설 (단, 지하매설물)
	㉡ 사업유형별 시설변경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차량방호시설, 도로표지판 ·항만안벽공법, 준설방법의 변경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준설방법의 변경 ·준설방법의 변경,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01 도로	
	02 항만	
	03 철도	
	04 농업개발	
	05 수자원	

<별표 2>

사업명 :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

2016. .

기 관 명

사업명 : ○ ○ ○

1.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자율조정전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주체		사업지역	
사업규모	○ ○		

2. 총사업비 변경내용

①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A)	변경(B)	증 감(B-A)	비 고
<총사업비>			자율조정금액	
○ 공사비				
○ 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자율조정 한도액>				

② 자율조정한도액 외 총사업비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공종별 (내역사업)	자율 조정일	조정액 (순증)		
		공사비 증감분	보상비 증감분	시설부대경비 증감분
계	21,375	14,158	4,917	2,300
* (A)-①-01 노반 1공구(공사비)	2015.01.01	14,158		
* (A)-②-01 2공구 (보상비)	2015.03.01		4,917	
* (A)-③-01 노반 1공구 (감리비)	2015.04.05			2,300
* 관련코드-자율조정 세부항목	yyyymmdd			

③ 자율조정한도액 내 총사업비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현행 자율조정한도액	총한도액 (A)	기집행액 (B)	잔여한도액 (C)
	7,094	-	7,094
금회 자율조정한도액 집행실적	집행일	집행액 (D)	세부 반영사유
<집행액 합계>	-	77	
* (B)-①-01 문화재 시발굴비	'15.4.10	70	▪ 2공구 노반 문화재 시발굴비
* (B)-②-02 안전시설보강	'15.4.10	7	▪ 2공구 철로접근 경계울타리 보강
* 관련코드-자율조정세부항목 참조			▪
* 관련코드-자율조정세부항목 참조			▪
* 관련코드-자율조정세부항목 참조			▪
조정 자율조정한도액	기집행액 (B+ D)	잔여한도액 (C-D)	
	77	7,017	

※ 작성요령

- 자율조정세부항목은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작성요령"의 (붙임2-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를 참고하여 "코드-자율조정항목" 형태로 기입
- 집행일은 연월일을 점(.)으로 구분하여 기재
- 자율조정시 감액되는 항목의 경우 자율조정 집행한도 잔액 산정시 제외(②자율조정한도액 외 총사업비 변경내역에 기입)

④ 낙찰차액 자율조정

(단위 : 백만원)

공종별 ¹⁾ (내역사업)	현행 공사비	최초계약				변경 공사비
		계약일	예산상 공사비 (A) ²⁾	계약액 (B) ³⁾	낙찰차액 (B-A)	
계						
<금회계약분>						
○						
○						
<기계약분>						
○						
○						
<미계약분>						
○						
○						

1) 계약단위별(공종 또는 내역사업)로 세분화하여 작성

2) 공사발주전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실시설계 금액(탄키공사의 경우 기본계획상 금액)

3)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관급자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 예산서 등 관련서류 첨부

5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현행 총사업비		<총사업비>			
		○ 공사비			
		○ 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현행 자율조정 한도액		총 한도액(A)		기 집 행 액	잔여 한도액(B)
변경 자율조정 한도액		계약일	계약액	자율조정 한도액(순증)	
				설 정 한도액 (C)	비 고
공 중	소 계	-	-		
	* 계약공중				
	* 계약공중				
조정 자율조정 한도액		총 한도액 (A+ C)		기 집 행 액	잔여 한도액 (B+ C)

※ 자율조정 한도액은 도급공사비(관급자재비는 제외)의 10%로 계약공중별로 설정

<별표 3>

사업명 :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완료 보고서

2016. .

기 관 명

【사업명】

사업명 :

I. 사업관리 항목

① 사업관리 코드

회계	소관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회계명	소관명	계정명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회계코드	소관코드	계정코드	분야코드	부문코드	프로그램코드	단위사업코드	세부사업코드

② 관리항목

사 업 유 형				사업수행 (대행)기관명	총액계상 예산사업	R&D 사업
토목사업	정보화	건축사업	연구기반 구축 R&D 사업			
		학교등 교육시설		경상대학교		

③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행기간		용역 수행기관	용역결과 총사업비	B/C	AHP	비고
	착수	완료					
기본계획(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④ 총사업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최초(A)	최종(B)	증 감	
			(B-A)	%
사업기간	최 초	최 종	조 정	

II. 사업 세부설명

담당자	기관(실·국)명	직책	성명	연락처

1. 사업개요

① 사업목적

○

② 사업위치

○

③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④ 사업 기대효과

○

⑤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 추진경위

▪

⑥ 사업추진 절차

○

⑦ 국고지원 기준

① 지원조건

▪

② 지원형태 및 수준

▪

구 분	총사업비	국 가				지자체	민간	기타
		직접수행	보조금	융자	출연 (출자)			
지원액(백만원)								
지 원 비 율								

2. 사업추진 현황

① 계약체결 현황

①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분(공정별)	예산상 공사비	최초계약			최종계약		계약 변경 회수	물가 조정 회수
		계약일	예정가격	계약액	계약일	계약액		
○ 기계약분 계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전기공사								
-								
○ 미계약분 계								
- 통신공사								
- 폐기물처리								
-								
합계								

② 보상비(용지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상 사업비(A)	현 계약현황		잔액 (A-B)	비 고
		일자	계약액(B)		
○ 보상비 (용지비)					

③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관리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상 사업비(A)	현 계약현황		잔액 (A-B)	비 고
		일자	계약액(B)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합계					

② 년차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시작년도(00년)		2년차~완료전년		완료연도(00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사업비>							
1.공사비							
2.보상비(용지비)							
3.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재원분담>							
○ 국고							
○ 지방비							
○ 차입							
○ 민자							
○ 기타							

3. 총사업비 변경 연혁(관리대장)

① 총사업비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단계	총 사업비	물 량 변 동			물 가 변 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최초 ()	예타								
1차 조정 ()	실시 설계		소계 :						
2차 조정 ()	공사 중		소계 :						
3차 조정 ()	공사 중		소계 :						

② 자율조정 한도액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현행 한도액 (A)	한도 설정액	집행액 (B)	변경 한도액 (A-B)	세부 반영내역
최초 ()						
1차 ()						
2차 ()						

※ 여기까지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양식과 거의 일치

4. 사업 완료 보고

① 총사업비 최종 정산

(단위: 백만원)

구분	최초	최종 (A)	최종집행액 (B)	잔액 (A-B)	비고
총계					
◦ 공사비					
◦ 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 최초 사업비는 최초로 확정된 사업비 규모(중장기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등)를 기입
- 최종 총사업비는 기획재정부와 마지막으로 협의를 거쳐 확정된 금액 기입
- 최종집행액은 완료보고시 기준으로 기입하는데 이때 "완료보고시"는 사업비가 마지막으로 집행된 시점을 의미
- 비고란에는 잔액분에 대한 사유, 사업비변동 주요원인 또는 특이사항을 기입

② 기타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내 용
----	-----

중앙관서 자율조정	자율조정 실적						자율조정 한도액 현황			
	총계	공사비			보상비	시설 부대 경비	설정 (A)	사용 (B)	잔액 (A-B)	소진율 (B/A)
		소계	물가 변동	물량 변동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간	수행기관	B/C	AHP	총사업비변동 (전/후)	결론
					/	

수요예측 재조사	용역기간	수행기관	수요예측변동 (전/후)	결론
			/	

지침위반 제재현황	제재 요구일	조치 통보일	위반내용	조치결과

- 중앙관서 자율조정 실적은 완료보고서 기준으로 기입
- 타당성 재조사, 수요예측 재조사 및 지침위반사례에 대한 제재현황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기입